트래블룰 이행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두 거점 모두 금융중개업자에게 가상자산 이전 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함께 전송하도록 요구합니다. 두 거점 모두 그 의무를 비수탁형 지갑과의 이전에까지 확대하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스위스는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10조를 기준금액 없이 적용하여, 비수탁형 지갑과의 이전에 대하여 지갑 보유자의 신원확인과 통제 증명을 요구합니다. 싱가포르의 PSN02는 가치 이전에 대하여 완전한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를 요구하고, 1,500싱가포르달러 미만에 대해서는 축소된 정보를 요구하며, 비수탁형 지갑에 대해서는 위험기반 조치를 요구합니다.[1] 실무상의 문제는 이른바 '선라이즈(sunrise)' 문제입니다. 트래블룰이 없는 관할의 거래상대방은 데이터를 받거나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가 업계의 메시징 프로토콜 중 하나를 사용하고, 그러한 프로토콜이 없는 거래상대방을 고위험으로 취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체크리스트

- 메시징 프로토콜 또는 서비스 제공자(TRP/OpenVASP, Notabene, Sumsub, Sygna 또는 이에 준하는 것)를 선정하고, 이를 통하여 연결 가능한 거래상대방을 문서화합니다.
- 전송할 데이터 항목을 정합니다. 송금인의 성명, 계좌 또는 지갑 식별자, 주소, 국가 신분증 번호 또는 생년월일 및 출생지, 그리고 수취인의 성명과 지갑 식별자입니다.
- 데이터를 받을 수 없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송금 이전의 절차를 정합니다. 차단, 비수탁형 지갑으로 취급, 또는 강화된 검토를 조건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한 수취 이전의 절차를 정합니다. 보류, 반환, 정보 요청, 또는 문서화를 조건으로 수락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 비수탁형 지갑 절차를 정합니다. 서명된 메시지나 소액 거래를 통한 고객의 통제 검증, 제3자인 경우 거래상대방의 신원확인, 위험 점수, 한도를 다룹니다.
- 거래상대방 실사 절차를 구축합니다. 거래상대방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VASP)의 라이선스 현황, 관할, AML 프로그램 확인, 제재 노출, 갱신 주기를 다룹니다.
-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기준금액을 하나의 운영 규칙으로 통일하고, 가능하면 더 엄격한 규칙을 그룹 전체에 적용합니다.
- 외국 거래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근거를 문서화합니다(스위스에서는 연방 개인정보보호법(FADP) 제16조 이하,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PDPA)의 국외이전 제한 의무).
- 각 방향의 샘플 이전과 다른 프로토콜을 쓰는 거래상대방과의 이전으로 이행 상태를 시험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 운영팀에게 수동 대체 절차와 보고 경로를 교육합니다.
- AML 감사의 일환으로 SRO 또는 MAS에 이행 상황을 보고합니다.

주

1.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10조. FINMA Guidance 02/2019 of 26 August 2019 on payments on the blockchain. MAS 고시 PSN02 중 가치 이전에 관한 항. 제F편 제IV장 및 제L편 제III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